

# 인도네시아 통신서비스 시장 통상환경과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에 대한 시사점

■ 여혁종\* · 박은지\*\*

2011년 5월에 시작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논의는 3차례의 공동연구 회의를 통해 공동연구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금번 서울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양자회담을 계기로 협상 개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중에 공식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통신서비스 시장 및 규제 현황, 통신서비스 통상환경을 인도네시아의 WTO 양허내용, 기 타결 FTA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및 협정문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시장 및 규제환경, 시장장벽, 시장개방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목 차

I. 서 론 / 31

II. 인도네시아의 통신서비스 시장 현황 / 32

1. 시장 현황 / 32
2. 외국계 사업자 진출 현황 / 34

III. 통신서비스 주요 규제 현황 / 35

1. 규제체계 / 35
2. 서비스 분류 및 허가제도 / 37
3. 외국인투자 규제 / 38
4. 기타 규제제도 / 39

IV. 통신서비스 분야 통상환경 / 40

1. WTO 양허내용 / 40
2. FTA 추진 동향 및 시장 개방 현황 / 41
3. 통신서비스 분야 시장장벽 / 51

V. 결 론 / 54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전문연구원, (02)570-4181, hyukjong@kisdi.re.kr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원, (02)570-4472, ejpark@kisdi.re.kr

## I. 서론

2011년 5월 한-인도네시아 통상장관 회담 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하며 시작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sup>1)</sup> 논의는 2011년 7월에 제1차 공동연구 회의를 개최하였고, 3차례의 회의 후 같은 해 11월에 공동연구 보고서를 최종 채택하였다. 양국은 2011년 말에 각각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내부 준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금번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양자회담을 계기로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개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미 인도네시아가 속한 아세안과 FTA를 체결했으나, 자유화 정도는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아세안 국가 중 경제적 잠재성이 높은 인도네시아와 개별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해왔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아세안 국가 중 최대 인구(2.43억 명)와 경제규모(7천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sup>2)</sup> 한-인도네시아 CEPA가 체결되면 우리의 대인도네시아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에너지·자원, 서비스,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와의 CEPA 협상이 올 상반기 중에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통신서비스 시장 및 규제 현황, 통신서비스 통상환경을 인도네시아의 WTO 양허내용, 기 타결 FTA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및 협정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의 시장 및 규제환경, 시장장벽, 시장개방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인도네시아 CEPA의 협상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CEPA란 상품 교역,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이다.

2)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

## Ⅱ. 인도네시아의 통신서비스 시장 현황

### 1. 시장 현황

#### (1) 시장 개요

약 13,000개의 섬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의 통신시장은 유선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으로 유선통신보다는 무선통신 서비스가 발달된 시장 구조를 이루고 있다. 국영통신사인 Telkom이 유선 및 인터넷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Telkom의 이동통신 자회사인 Telkomsel이 이동통신시장의 1위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통신시장은 사실상 국영통신사 Telkom이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무선통신 가입자 수를 기록하며 2005년에 불과 20%이던 보급률이 2010년에는 95%까지 증가해 급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장 성장 가능성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이동통신시장에는 이미 많은 외국계 통신사업자들이 진입해 있다. 그리고 최근 인도네시아의 Facebook 사용자 수가 세계 2위를 차지하며 광대역 및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sup>3)</sup> 특히 무선통신사업자들의 주요 수익구조가 기존의 음성, 문자에서 데이터 통신 및 모바일 콘텐츠로 전환되고 있는 단계에 있어 모바일 콘텐츠에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 유선통신시장

인도네시아의 유선통신시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리한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발달이 저조한 상황으로 2011년 유선전화 회선 4,272만을 보유하며 17.2%의 낮은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가입자 수 기반 연평균 성장률은 11%로, 동기간 25%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인 무선통신에 비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유선통신시장은 국영 통신사인 Telkom(정부지분을 51.19%)이 시장의 70%를 점유하며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그 밖에 Indosat, Barkie Telecom

3) KOTRA(2011. 9. 27), “인도네시아, 이동통신시장 급성장,” 해외시장정보.

등이 주요 유선통신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다.

### (3) 이동통신시장

인도네시아의 이동통신시장은 유선통신 발달에 불리한 지리적 조건과 정부의 신규 사업자 진입에 대한 대폭 허용으로 인한 경쟁 활성화, 이동통신요금 및 상호접속료 인하 정책으로 인한 이동통신 가격 인하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급속히 성장해왔다. 2011년 무선통신 가입자 수가 2억 7,508만 명으로 추정되며, 보급률은 113.5%로 예상된다. 비록 성장 속도가 다소 완화되어 가고는 있지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5%로 비교적 높은 성장가능성을 가진 시장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이동통신시장에는 Telkomsel, Indosat, XL Axiata(전신 Excelcomindo), Hutchison '3' Telecom, Axis, Bakrie Telecom 등 10여 개의 사업자가 존재한다. 그중 Telkomsel이 2011년 3/4분기 가입자 수 기준 40%의 시장을 점유하며 최대 사업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 밖에 Indosat이 19.8%, XL Axiata가 16.7%의 점유율을 보이며 주요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구의 48%가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을 접속하는 등 무선 인터넷에 대한 수요가 높아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현재 무선 인터넷 등과 관련한 네트워크 품질 향상 및 모바일 콘텐츠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 (4) 인터넷 시장

인도네시아는 인터넷 이용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취약한 유선 인프라와 낮은 구매력 때문에 보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2008년 10.7%이던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35%로 추정되며,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 수 역시 2008년 2,500만 명에서 2011년에는 8,475만 명으로 추정되어 50%의 높은 연평균성장률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1년 브로드밴드 가입자는 207만 명(보급률 0.9%)으로 추정되며, 최대 사업자로 Telkom과 Indosat이 존재하나 Telkom이 시장의 70%를 지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해저 광케이블을 이용해 인터넷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 주도로 33개 주 460개 시·군 지역을

브로드밴드로 연결하는 ‘Palapa Ring’ 광케이블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표 1> 인도네시아 통신시장 가입자 수 및 보급률

(단위: 천 달러)

	2008	2009	2010	2011e
유선전화 회선 수 (보급률)	30,378 (13.4%)	33,896 (14.3%)	37,959 (15.8%)	41,718 (17.2%)
무선통신 가입자 수 (보급률)	139,632 (61.4%)	175,147 (73.8%)	222,738 (92.9%)	275,081 (113.5%)
인터넷 가입자 수 (보급률)	25,000 (10.7%)	41,081 (17.3%)	60,975 (25.4%)	84,755 (35%)

※ e: 추정치

자료: BMI(2012)

## 2. 외국계 사업자 진출 현황

인도네시아의 무선통신시장에는 높은 성장 가능성으로 인해 이미 많은 외국계 통신사업자들이 진출해 있다. Telkomsel, Indosat, XL Axiata(전신 Excelcomindo), Hutchison ‘3’ Telecom, Axis, Bakrie Telecom 등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이동통신사 중 Telkomsel과 Bakrie Telecom을 제외한 모든 대표적 이동통신사업자 지분의 50% 이상이 외국인 소유이다.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Telkomsel의 경우 Singapore Telecom Mobile이 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선통신 국영사업자인 Telkom이 나머지 지분인 65%를 보유하고 있다. 기존에 싱가포르 텔레콤이 상당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Indosat은 현재 Qatar Telecom이 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14.2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XL Axiata(전신 Excelcomindo)는 말레이시아의 Axiata Group이 66.6%를, UAE의 Emirates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 인도네시아 법인이 1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Hutchison ‘3’ Telecom은 홍콩계 Hutchison Telecommunications International Limited가 60% 지분을 태국계 유통업체인 Charoen Pokphand이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Axis는 Saudi Telecom

이 80%, 말레이시아의 Maxis Communication이 14.9%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외국계 사업자 진출방식은 인도네시아 이동통신허가사업자 내 지분투자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2011년 AT&T는 합자기업인 AT&T Indonesia를 통해 최초로 인도네시아의 이동통신허가를 직접 취득하였다. AT&T Indonesia는 인도네시아 내 다국적 기업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이동통신사업허가를 통해 향후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 및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에 사업 분야를 확대·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sup>4)</sup> 또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통신사업자로는 SK텔레콤이 있는데, 2010년 8월 인도네시아 최대 통신기업인 Telkom과의 49% 지분투자를 통해 PT Melon Indonesia를 설립하고, 디지털 음악 콘텐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sup>5)</sup> SK텔레콤의 진출은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등 향후 인도네시아 통신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신규 사업 분야로의 진출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의 통신시장은 외국계 사업자의 진출이 매우 활발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현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분투자를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던 기존 외국계 사업자의 진출 패턴이 최근에는 사업허가 자체 취득 등 보다 적극적인 시장개척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 등 신규 서비스로의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Ⅲ. 통신서비스 주요 규제 현황

#### 1. 규제체계

##### (1) 규제기관

인도네시아의 통신 관련 규제기관에는 통신정보기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CIT)와 통신규제국(Indonesian Telecommunications

4) *Financial times*(2011. 6. 8). “AT&T wins licence race in Indonesia.”

5) 《이테일리》(2010. 6. 30), “SKT, 인도네시아 음원시장 진출..‘점유율 40%’ 목표”.

Regulatory Board, ITRB)이 존재한다. 통신정보기술부는 2005년 1월 우정통신국(Directorate General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과 통신정보부(State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를 통합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인도네시아의 방송, 통신, IT, 우정 전반에 걸친 규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산업의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통신규제국은 통신 분야 규제 및 감독,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2003년 7월 통신 네트워크 운영에 있어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통신규제국 이전에는 우정통신국(DGPT)이 규제 및 감독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2000년 8월 통신법 개정으로 규제와 감독기관으로 분리되었다.

## (2) 통신 법규

인도네시아는 1999년 통신법(New Act No. 36/1999)을 통해 산업 구조조정과 외국인투자 유치 등으로 통신시장의 자유화를 도모하였다. 기존의 통신법(Act No. 3/1989)에서는 기본 서비스는 국영기업에 한하여 허가하고, 기타 서비스들은 국영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제공하도록 제한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통신법(Act No. 36/1999)의 등장으로 Telkom, Indosat 두 국영기업의 독점권을 제거하고, 기본 서비스에도 국내외 민간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통신법(Act No. 36/1999)을 통해 보편적 서비스의 적용을 본격화하고,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규제기구를 설립하게 되었다.

〈표 2〉 인도네시아의 규제체계

구 분	내 용
관련 규제 및 정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정보기술부(MCIT)</li> <li>• 통신규제국(ITRB)</li> </ul>
통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AW OF THE REPUBLIC INDONESIA NO.36 OF 1999 REGARDING TELECOMMUNICATIONS</li> </ul>

## 2. 서비스 분류 및 허가제도

### (1) 허가제도

#### 1) 통신사업 분류

인도네시아의 통신서비스 사업은 통신운영관련정부규정<sup>6)</sup>에 의해 크게 통신서비스사업과 통신망사업으로 분리된다. 통신서비스사업은 기본전화(basic telephone), 부가전화(value-added telephone), 멀티미디어(multimedia) 서비스 사업으로 분류되며, 통신망사업은 고정망(fixed network)과 이동망(mobile network) 사업으로 분류된다. 고정망은 다시 고정지역망(fixed local), 고정장거리망(fixed long distance), 고정국제망(fixed international) 사업으로 분류되며, 이동망은 지상이동망(terrestrial mobile), 셀룰러이동망(cellular mobile), 위성이동망(mobile satellite) 사업으로 재분류된다.

〈표 3〉 인도네시아 통신사업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통신망사업	고정망(fixed network)	고정지역망(fixed local) 고정장거리망(fixed long distance) 고정국제망(fixed international)
	이동망(mobile network)	지상이동망(terrestrial mobile) 셀룰러이동망(cellular mobile) 위성이동망(mobile satellite)
통신서비스사업	기본전화(basic telephone) 서비스 부가전화(value-added telephone) 서비스 멀티미디어(multimedia) 서비스	

#### 2) 허가제도

통신망 및 통신서비스 운영 허가를 위해서는 원칙허가(principle license)의 취득 후,

6) DGPT(우정통신국, 2000), GOVERNMENT REGULATION NO.52 OF 2000 REGARDING TELECOMMUNICATIONS OPERATION



운영허가의 취득이 필요하다. 우선, 원칙허가의 경우 통신 분야의 재정자원 및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인도네시아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서에는 기업정보, 통신망 및 서비스 구축계획,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규제기관의 심사 및 선정을 통해 원칙허가가 부여된다. 허가기간은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운영허가는 원칙허가의 취득 후 신청이 가능하며, 설비 및 인프라 구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운영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허가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5년에 한번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시에는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

### 3. 외국인투자 규제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사항은 투자법(No.25/2007)과 투자규제업종에관한대통령령(No.36/2010)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본 대통령령은 외국인투자 금지 및 제한사항을 산업별로 기재한 목록으로 산업별 외국인투자지분제한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서비스의 외국인지분제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신망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유선통신은 49%, 사설유선통신은 65%, 이동통신(셀룰러, 위성)은 65%로 외국인지분이 제한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49%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멀티미디어서비스제공자의 경우 공중인터넷전화, 기타 멀티미디어서비스는 49%, 인터넷접속서비스는 65%, 데이터통신시스템은 95%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전화부가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현지 사업자와의 파트너십 체결 요건만이 존재하며, 전화부가서비스는 콘텐츠서비스(링톤, 프리미엄문자 등), 콜센터, 기타 부가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통신탑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를 전면금지하고 있다.

〈표 4〉 인도네시아 통신서비스별 외국인투자지분제한

사업 분류	세부 분류	지분제한 내용
통신망서비스	유선통신서비스	49%
	사설유선통신서비스	65%
	이동통신서비스(셀룰러, 위성)	65%
멀티미디어 및 인터넷서비스		49%
멀티미디어서비스	공중인터넷전화, 기타 멀티미디어서비스	49%
	인터넷접속서비스	65%
	데이터통신시스템	95%
전화부가서비스	콘텐츠서비스(링톤, 프리미엄 문자 등), 콜센터, 기타 부가서비스	파트너십 체결 요건
통신탑		외국인투자금지

## 4. 기타 규제제도

### (1) 상호접속 규제정책

인도네시아는 2006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령 제8호를 제정하여 상호접속에 대한 원가기반접속요금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장관령은 비용계산방식, 회계분리, 상호접속 약관 가이드라인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호접속요금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 간 상호접속 트래픽을 집계·정산하는 ‘Clearing House’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8년에는 이동통신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상호접속요금을 조정하기도 하였다.

### (2) 보편적 서비스 제도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전화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이 많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지역으로 통신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2003년부터 통신사업자들에게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적용하였다. 2006년까지 약 5,354개

마을에 전화회선이 설치되었으며, 2007년 이후부터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전화, SMS, 저속 인터넷 서비스 등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말까지 1,070만 유선전화회선 설치를 계획했으나, 사업자들의 참여 부족 및 기금 부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IV. 통신서비스 분야 통상환경

### 1. WTO 양허내용

인도네시아의 WTO 시장개방약속을 살펴보면,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f Trade in Services, GATS) 서비스 양허<sup>7)</sup>와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서비스 양허안<sup>8)</sup>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통신서비스를 개방하고 있다. 기본 통신서비스의 경우 W/120<sup>9)</sup> 분류체계를 따르지 않고 자체 서비스 분류 방식을 사용하여 시장개방을 약속하였다. 공중교환전화, 회선교환공중데이터네트워크 및 원격회의 서비스에 대하여 각각 시내, 장거리, 국제로 구분하여 양허하였으며, 패킷교환공중데이터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하여 X.25, 프레임 중계, 시내, 장거리, 국제로 구분하여 양허하고, 텔렉스, 전신 및 국내 서비스(이동전화서비스, PCS서비스, 호출서비스, 공중전화서비스), 인터넷접근서비스도 개방하였다. 개방범위는 우리나라가 양허한 위성서비스, 전용회선서비스, TRS 등을 양허하지 않아 한국이 보다 광범위하게 개방했다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상기 개방 서비스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35%까지 제한하고 있으며, 세부 서비스별로 합자, 합작투자, 계약 매니지먼트 등 허용 가능한 투자형태를 명시하고 있다. 국제서비스의 콜백서비스를 불허하고, 패킷교환, 텔렉스, 전신서비스는 PT

7) WTO(1994), GATS/SC/43, WTO(1997), GATS/SC/43/Suppl.2

자세한 양허표 내용은 첨부1 참고.

8) WTO(2005), TN/S/O/IDN

9) WTO 협상을 위한 서비스 분야별 분류 목록(MTN.GNS/w/120, 10 July 1991)

Indosat과 PT Satelindo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공급 가능하도록 제약하고 있으며, 장거리전화시장은 PT Telkom의 독점, 국제전화시장은 PT Indosat 및 PT Satelindo의 독점체제 등 사업자 수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인력이동과 관련하여 합자회사에 근무 가능한 외국 경영 및 기술 전문가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WTO 양허상 외국인지분제한, 국경 간 공급 제한, 진입사업자 및 외국 근무자에 대한 수량제한을 두는 등 다양한 시장접근 제약이 존재해 49% 외국인지분제한 및 국경 간 공급 시 상업적 약정 체결 의무만을 부여하는 우리나라보다 폐쇄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WTO 시장개방 양허사항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음성메일서비스, 이메일서비스, 컴퓨터시분할서비스, 비디오텍스서비스, 이메일박스, 파일전송서비스, 가정용원격검침알람, 엔터테인먼트서비스, 경영정보서비스를 개방하고 있다. 상기 개방서비스에 대해 기존에 승인된 외국계 사업자 외에 다섯 개 사업자를 추가 허용하는 조건으로 시장개방을 약속하고, 2020년까지 외국인서비스공급자의 납입자본금을 국내 서비스공급자보다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가통신서비스를 완전 개방하고 있는 한국에 비해 훨씬 제한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WTO 참조문서를 채택하였으나, 제5조(독립적인 규제기관)에서 규제당국과 기본통신서비스제공자의 분리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6조(희소자원의 분배와 이용)에서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절차를 ‘비차별적’으로 운영해야 함을 명시하지 않는 등 자국의 사정에 맞춰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채택하였다.

## 2. FTA 추진 동향 및 시장 개방 현황

### (1) 인도네시아 FTA 협상 추진 현황

인도네시아는 2012년 3월 기준 총 6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일본('07)과의 FTA를 제외한 5건은 모두 아세안 차원에서 체결하였다. 아세안 차원에서 체결한 FTA는 중국(상품 '04, 서비스 '07, 투자 '09), 일본('08), 인도('09), 호주·뉴질랜드('09), 한

국('06 상품, '07 서비스, '09 투자) 등이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차원에서 EU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인도네시아 단독으로 스위스, 인도, 호주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미국, 대만과 단독으로 협상을 준비 중이며, 아세안 차원에서는 파키스탄과의 협상을 준비 중이다.

〈표 5〉 인도네시아 FTA 추진 현황

기 체결 FTA	협상 중인 FTA	검토 중인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세안-중국 (상품 '04, 서비스 '07, 투자 '09)</li> <li>• 인니-일본('07)</li> <li>• 아세안-일본(상품 '08)</li> <li>• 아세안-인도(상품 '09)</li> <li>• 아세안-호주-뉴질랜드('09)</li> <li>• 아세안-한국 ('06 상품, '07 서비스, '09 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니-스위스</li> <li>• 인니-인도</li> <li>• 인니-호주</li> <li>• 아세안-E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니-한국</li> <li>• 인니-미국</li> <li>• 인니-대만</li> <li>• 아세안-파키스탄</li> </ul>

인도네시아는 기존의 FTA에서 통신협정문을 독립된 챕터로 체결한 경우는 없었으나,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에서 서비스 협정문 하에 통신부속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기 체결 FTA 서비스 양허표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일본, 아세안-한국,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에서만 통신서비스 시장을 양허하고 있다.

〈표 6〉 인도네시아 기 체결 FTA 통신협상 결과

협정국	체결시기	통신협정문	통신양허 (양허 수준)
아세안-중국	2007. 1. 14	× ※ WTO 통신부속서 채택	×
인니-일본	2007. 8. 20	× ※ WTO 참조문서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채택	○ (WTO-Plus)

협정국	체결시기	통신협정문	통신양허 (양허 수준)
아세안-한국	2007. 11. 21	× ※ WTO 참조문서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채택	○ (WTO-Plus)
아세안-일본	2008. 4. 14	×	×
아세안-호주- 뉴질랜드	2009. 2. 27	○ ※ 서비스 챕터 하의 부속서 형태 ※ WTO 통신부속서 채택 및 참조문서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채택	○ (WTO-Plus)
아세안-인도	2009. 8. 13	×	×

## (2) 기 타결 FTA 통신서비스 협정문 주요 내용

통신서비스, 특히 유선통신서비스의 경우 초기 인프라 투자비용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서비스 도입기에는 정부가 직접 또는 국영기업이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민영화 이후 완화된 규제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FTA 협정 당사국의 통신사업자가 상대국 시장에 진출할 때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장받기 위해 FTA 협상에서 통신서비스 협정문을 다루게 되었다. FTA는 이러한 경우에 당사국 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FTA 타방 당사국의 기존 통신 인프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주고, 상대국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당사국 사업자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관행을 막는 효과가 있어, 당사국 사업자가 상대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준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통신 분야 선진국들이 체결하는 FTA에서 통신 분야를 독립챕터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통신챕터의 조항들은 WTO GATS 통신부속서 및 참조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서 더 나아가 재판매, 망요소세분화, 전용회선, 설비병설 등의 의무를 규정하여 협정당사국 사업자들이 상대국 시장에 진출할 때 최소한의 공정한 조건 속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조치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FTA에서 통신협정문을 독립된 챕터로 체결한 경우는 없으며,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에서 서비스 협정문 하에 통신부속서를 채택한 것이 WTO GATS 플러스 내용을 담고 있는 통신협정문을 체결한 유일한 사례이다. 아래에서는 호주가 체결한 아세안-호주-뉴질랜드 통신부속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표 7> WTO GATS,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통신부속서 비교

구 분	WTO GATS	아세안-호주-뉴질랜드	WTO 플러스 내용
적용범위	통신부속서 2조, 통신참조문서 도입부	제1조	
정의	통신부속서 3조, 통신참조문서 도입부	제2조	
이행약정		제3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가적 의무			
경쟁보장장치	통신참조문서 1조	제4조	
상호접속	통신참조문서 2조	제6조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효율 및 조건이 최소한 상업적 협상 또는 지배적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요건 및 규제기관이 승인한 조건에 따라 체결될 수 있도록 보장
상호접속 분쟁해결	통신참조문서 2.5조	제9조	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기관의 결정에 대해 서면 설명 제공
전용회선서비스의 공급		제8조	전용회선서비스 제공
설비병설		제7조	상호접속에 필요한 물리적 설비 병설 제공

구 분	WTO GATS	아세안-호주-뉴질랜드	WTO 플러스 내용
통신규제기관의 독립성	통신참조문서 5조	제11조	통신규제기관의 기능 및 의무가 당사국의 국내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통신규제기관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결정사항에 대한 책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
보편적 서비스	통신참조문서 3조	제12조	
허가절차	통신참조문서 4조	제5조	허가가 필요한 정황, 허가취득비용, 허가유효기간 등을 공개할 의무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통신참조문서 6조	제13조	
투명성	통신부속서 4조	제10조	

아세안-호주-뉴질랜드 통신부속서는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WTO 통신부속서 및 참조문서의 내용을 대부분 차용하였다. 그러나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접속, 독립 규제기관 조항 등에서는 내용적으로 WTO 플러스 의무가 일부 추가되었고, 전용회선서비스의 공급, 설비병설 등 WTO 플러스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협정당사국 중 일부 국가는 이행약정을 통해 경쟁보장장치, 상호접속, 설비병설, 전용회선, 분쟁해결 조항의 의무를 시차를 두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인도네시아는 이행약정에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통신부속서의 모든 의무를 FTA 발효 즉시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

#### 1) 적용범위(제1조: Scope and Coverage)

아세안-호주-뉴질랜드 통신부속서는 공중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된다. 하지만 국내법에 따라 정의되는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의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 부속서는 각 당사국이 시장개방 약속을 하지 않은 공중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2) 정의(제2조: Definitions)

동 부속서의 목적에 따라 설비병설, 원가지향적, 필수설비, 설비기반공급자, 상호접속, 전용회선, 지배적 사업자, 비차별적, 공중통신전송망, 공중통신전송서비스, 통신, 통신규제기관, 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였다.

3) 이행약정(제3조: Transitional Arrangements)

각 당사국들의 상이한 개발단계와 GATS를 통해 약속한 시장개방 수위를 고려하여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협정당사국 중 일부 국가는 이행약정을 통해 제4조(경쟁보장장치), 제6조(상호접속), 제7조(설비병설), 제8조(전용회선), 제9.2조(분쟁해결)의 의무를 시차를 두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이를 기재하지 않아 협정문의 발효 즉시 통신부속서의 모든 의무를 적용받는다.

4) 경쟁보장장치(제4조: Competitive Safeguards)

각 당사국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행위를 행하거나, 지속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반경쟁적 행위는 반경쟁적 교차보조에의 관여, 경쟁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이용으로 인한 반경쟁적 결과 초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 및 상업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의 시의적절한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5) 허가(제5조: Licensing)

각 당사국은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가 필요한 정황, 허가 신청절차, 허가 심사기준, 허가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조건, 허가심사 소요기간, 허가 신청 및 발급 비용, 허가 유효기간을 포함한 자국 영역 안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허가 관련 모든 조치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각 당사국은 허가 신청자의 요청이 있으면 허가 불허사유를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6) 상호접속(제6조: Interconnection)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당사국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해

야 한다. 이러한 상호접속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제공된다. 적시에 원가지향적인 요율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망세분화가 충분히 이뤄져,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상호접속을 제공받기 위해 망 구성요소 또는 해당 설비에 관해 서비스 제공에 불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배적 사업자 자사에 제공되는 서비스,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동종 서비스에 대하여 공급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다수의 이용자가 접속하는 망 종단점 외의 지점들에서도 추가적인 소요설비 구축을 위한 비용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요청이 있을 시 상호접속을 제공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 사업자와 다른 당사국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제공자 간의 상호접속에 관한 조건 및 요율이 최소한 상업적 협상이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며, 전기통신 규제기관에서 제정·승인한 표준 조건 및 요율 등에 관한 일련의 참조 지침에 따라 성립될 수 있어야 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에 관한 절차를 공표하거나, 공개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7) 설비병설(제7조: Co-location)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 사업자가 타방 당사국의 설비기반사업자인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호접속에 필요한 물리적 설비 병설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물리적 설비병설이 기술적 이유 또는 공간적 제한으로 인하여 실현될 수 없는 경우, 그 지배적 사업자가 타방 당사국의 설비기반 사업자와 협력하여 실현가능하고 상업적으로 유효성이 있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고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 사업자가 물리적 설비 병설 또는 대안적 방안을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요금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가 설비병설 또는

대안을 어느 위치에서 제공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8) 전용회선서비스(제8조: Leased Circuits Services)

각 당사국은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 사업자가 전용회선서비스를 타방 당사국의 공중 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조건과 요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분쟁의 해결(제9조: Resolution of Disputes)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에서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설비병설, 전용회선을 요청한 타방 당사국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상호접속, 설비병설, 전용회선에 관한 조건 및 요금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개된 절차와 합리적인 기간 안에 영향을 받은 타방 당사국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각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은 타방 당사국 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요구할 경우, 이미 공개된 내용이 아닌 이상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결정에 관해서든 문서화된 형식으로 설명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10) 투명성(제10조: Transparency)

각 당사국은 동 부속서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1) 통신규제기관(제11조: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각 당사국은 국내법 체계의 일부로서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분리된 통신규제기관을 설립 및 유지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모든 의사결정 권한 등을 포함하는 통신규제기관의 기능과 의무는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각 당사국은 통신규제기관의 의사결정과 사용되는 집행절차가 모든 이해관계자들 앞에서 공정하도록 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통신규제기관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결정사항에 대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통신규제기관

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국은 그 절차가 실제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2) 보편적 서비스(제12조: Universal Service)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기를 원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기반을 둔 교차보조정책을 포함하는 이러한 차원의 의무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 중립적인 방식으로 시행되고, 당사국이 정의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반경쟁적이라고 구분되지 말아야 한다.

13) 희소자원의 배분과 이용(제13조: Allocation and Use of Scarce Resources)

각 당사국은 주파수, 번호 등을 포함한 희소자원의 배분과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시행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할당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sup>10)</sup> 당사국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할당한 주파수의 확인을 공표하거나, 공개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3) 기 타결 FTA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인도네시아의 기 타결 FTA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현황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일본, 아세안-한국, 아세안-호주-뉴질랜드 3건의 FTA를 통해서만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을 약속하고 있어 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해 비교적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FTA는 모두 WTO GATS 방식을 사용하여 양허표를 작성하였으며,<sup>11)</sup> 모두 WTO 양허 수준보다는 개방적으로 통신서비스 시장을 양

10) 다만 당사국은 특정 허가를 위해 할당된 개별 주파수의 할당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11) WTO GATS 방식에 따라 양허표를 작성하면, 개방 대상 서비스 분야는 'positive list' 방식이 적용되어 등재한 서비스 분야만 개방된다. 등재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각각의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해서는 'negative list' 방식이 적용되어 양허표 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의 무역제한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추가적 약속에 대해서는 positive list 방식이 적용되어 양허표에 기재한 내용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양허표 기재방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박영덕(2010) pp.7~24를 참고할 것.

허하였다.

우선, 개방범위는 WTO 양허와 동일한 서비스 범주이며, 기본통신서비스의 경우 국경 간 공급(mode1)에 대해 인도네시아-일본, 아세안-한국,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모두 WTO 제한사항인 패킷교환, 텔렉스, 전신 서비스의 PT Indosat과 PT Satelindo 통신망 경우 요건을 제거하고, 기본통신서비스에 대한 국경 간 공급을 완전히 허용하였다.

기본통신서비스의 해외소비(mode2)의 경우 WTO에서는 공중교환전화, 회선교환 공중데이터네트워크, 원격회의서비스의 국제서비스에 대한 콜백을 금지하고, 해외소비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미양허했다. 그러나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에서는 내국민대우를 양허하고, 인도네시아-일본, 아세안-한국 FTA 양허를 통해서도 해외소비와 관련된 모든 제한사항을 제거하고 이를 완전히 개방하였다.

또한 상업적 주재(mode3)에 관하여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는 WTO와 동일한 제한 수준인 35% 외국인지분제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일본 및 한국과의 FTA를 통해서도 외국인 지분 상한선을 40%로 상향 조정하여 개방·확대하였다. 단, 인도네시아-한국 FTA의 경우 공중교환전화, 회선교환공중데이터네트워크, 원격회의서비스의 시내서비스에 한해 기존의 35% 지분제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본통신서비스의 자연인 이동(mode4)에 대해 한국과의 FTA를 통해서도 경영 및 기술 전문가를 20명으로 제한하여 WTO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방하였다. 그러나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에서는 자연인의 이동을 미양허하고, 일본과의 FTA에서는 수평적 양허 외 미양허하여<sup>12)</sup> WTO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개방하였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일본, 아세안-한국,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를 통해 PT Indosat과 PT Satelindo 통신망을 통한 국경 간 공급 제한요건을 제

12) 수평적 양허 내용 중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사·경영진 및 기술전문가는 2년 단위로 체류가 가능하며(2년 연장 2회 가능, 최대 6년), 기업 내 전근의 경우 경제적 수요심사를 통해 허용하고, 일시적 체류의 경우 60일(최대 120일까지 연장 가능) 체류가 가능하다.

거하였다. 그리고 일본 및 한국과의 FTA를 통해 국제 콜백서비스를 허용하고, 외국인 지분제한을 35%에서 40%까지 확대(단, 한-아세안 FTA에서 시내서비스는 35%까지만 허용)하여 WTO보다 개방적인 수준의 통신서비스 시장 양허를 약속하였다.

기 타결 FTA의 부가통신서비스 시장개방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아세안 FTA는 WTO와 동일하게 신규 외국계 사업자 수를 제한하고 외국계 사업자에 대해 국내 사업자보다 높은 납입자본금을 요구하는 제한사항을 두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일본,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는 WTO처럼 신규 외국계 사업자 수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각각 40%, 35%의 외국인지분제한을 기재하여 개방을 제한하였다. 이는 많은 국가들이 부가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해 완전 개방을 약속하고 있는 현 추세를 고려할 때 폐쇄적인 시장개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국내법상 유선에 대해 49%, 무선통신에 대해 65%,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해 최대 95% 등의 지분제한을 두는 점을 감안할 때, 인도네시아의 FTA 차원의 시장개방 수준의 자국 실제법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개방하여 통신서비스에 대한 폐쇄적인 FTA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통신서비스 분야 시장장벽

2007년 투자규제업종에관한대통령령(No.77/2007)을 발표하기 이전의 인도네시아 통신시장은 외국인투자에 매우 개방적인 시장이었다. 그러나 통신서비스 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최대 95%까지 허용하던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외국인투자규정인 투자규제업종에관한대통령령을 통해 통신서비스의 외국인지분투자 상한선을 유선통신망 서비스는 49%, 사설유선통신망 및 이동통신망(셀룰러, 위성)서비스는 65%로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기존에 최대 95%까지 통신서비스 산업 내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던 이전의 규정 및 실제 외국인투자 현황에 비해 급격히 후퇴한 수준이었다.

2007년 투자규제업종에관한대통령령을 도입할 당시 이미 많은 외국계 통신사업자가 진출해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지분을 역시 투자규제업종에관한대통령령에서 명시한 지분제한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이동통신사업자 엑셀콤인도(Excelcom-

indo Pratama)의 경우 말레이시아 통신의 100%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Indocel을 통해 66.9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의 국부 펀드인 Khazanah Nasional Bhd이 16.81%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 다른 이동통신사업자 Hutchinson CP Telecom Indonesia는 홍콩의 Hutchinson Telecom이 60%의 지분을, Axis는 Maxis Malaysia가 95%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이미 인도네시아 통신산업에 상당한 외국인 자본이 유입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외국계 자본에 의해 잠식된 통신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가 기반 산업인 통신 산업의 주권을 회복하고, 자국 통신 산업 자생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한도를 40%대로 낮추어 인도네시아인의 통신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었다.<sup>13)</sup>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로운 투자규정인 투자규제업종에관한대통령령에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기존의 규제 수준 및 실제 시장 상황에 훨씬 뒤떨어진 통신시장 외국인투자지분제한 규정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sup>14)</sup>

또한 독점금지법을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을 철회하도록 한 사례도 있다. 2007년 당시 싱가포르 국부 펀드 테마섹(Temasek)이 지분의 56%를 소유하고 있는 Singapore Telecom은 인도네시아 최대 이동통신사인 Telkomsel 지분의 35%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테마섹이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Singapore Technologies Telemedia는 2위 규모의 이동통신사인 Indosat 지분의 39.96%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인도네시아 공정거래위원회(KPPU)는 테마섹이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의 1, 2위 이동통신사업자를 교차소유하고 있고, 이것은 인도네시아 독점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판결 후 테마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소하였다. 테마섹은 Telkomsel과 Indosat에 직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Telkomsel의 경우 인도네시아 국영통신사인 Telkom이 6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섹은 Telkomsel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테마섹이 인도네시

13) KOTRA(2007. 5. 31), “인도네시아 이동 통신산업 현황과 이슈”, 해외시장정보

14) 단, 투자규제업종에관한대통령령(No.77/2007) 제정 이전의 투자에 대해서는 적용 면제함

아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독점적·반경쟁적 행위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법원은 테마섹의 항소를 기각하고, 테마섹은 Indosat 지분을 모두 매각하였다.

2008년에 인도네시아는 통신기술정보부령을 통해 통신탑의 건설, 운영, 소유를 국내 자본에만 허용하는 규정을 발표하고, 2년 이내에 외국인투자를 철회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는 2007년 투자규제업종에관한대통령령에서는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2007년 투자규제업종에관한대통령령에 따르면 통신탑은 100%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분야였다. 그러나 2010년에 제정된 새로운 투자규제업종에관한대통령령 개정령에서 통신탑의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통신기술정보부령과의 통일성을 확보하였다. 단, 동 대통령령 이전에 이루어졌던 투자에 대해서는 해당 제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어 기존의 외국인투자 철회를 명령하던 통신기술정보부령보다는 완화된 수준의 규정을 제안하였다.

2009년 12월 통신기술정보부는 통신설비투자에 대해서도 국산장비 및 서비스 사용 의무 규정을 발표하고, 설비투자비용의 35%를 국산장비 및 서비스로 조달하도록 명령하였다. 또한 본 규정은 국산설비비용 중 40%는 지방사업자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5년 이내 지방생산제품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규제하였다. 이러한 국내산 조달 요구 조치는 ‘GATT 제3조제4항에 규정된 내국민대우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무역관련투자조치’로 인도네시아의 WTO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 의무에 위반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sup>15)</sup>

이처럼 최근 몇 년간의 인도네시아 통신 산업은 보다 폐쇄적인 성격의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를 채택해왔으며, 자국 산업 보호적 정책을 고수해왔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시장진입 제한 조치들이 이전의 개방수준보다 훨씬 후퇴한 수준으로 개정되었으며, 실제로 외국인투자가 매우 왕성한 시장환경에 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시장 제한적 규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인도네시아의 통신

15) USTR(2010), USTR Section 1377 보고서를 위한 Coalition of Service Industries(CSI) 설문 내용 중



시장은 자국 산업 육성 목적에 지나치게 치우쳐 국내사업자와 국외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무역 제한적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V. 결 론

인도네시아는 경제발전을 위해 1960년대부터 수출 주도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였고, 대외적 개방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 유치와 무역증대에 집중하여 왔다. 통신 분야의 경우에도 2007년 투자규제업종에관한대통령령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국내법상 외국인투자를 최대 95%까지 허용하는 매우 개방된 시장이었다. 하지만 기간 산업인 통신 산업의 외국계 자본 잠식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며 외국인투자 상한선을 유선통신 49%, 이동통신 65%로 낮추는 등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WTO 및 FTA 양허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통상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향후에 인도네시아의 외국인투자 제한 수준이 현재보다 후퇴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와의 FTA를 통해 우리 사업자들이 인도네시아 통신시장에 대한 투자 및 진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보다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아세안 FTA에서 우리나라는 국내법에 준하여 시장개방을 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상술한 바와 같이 WTO 양허수준보다는 높지만, 국내법보다는 낮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하였다. 특히 부가통신서비스 시장과 관련해서는 한-아세안 FTA는 WTO와 동일하게 신규 외국계 사업자 수를 제한하고, 외국계 사업자에 대해 국내사업자보다 높은 납입자본금을 요구하는 제한사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일본,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는 WTO처럼 신규 외국계 사업자 수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각각 40%, 35%의 외국인지분제한을 기재하여 개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많은 국가들이 부가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해 완전 개방을 약속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매우 폐쇄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인도네시아 FTA 협상에서는 한-아세안 FTA에서 인도네시아가 제시한 개방수준보다 높은 수준

의 시장개방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협정문 협상과 관련, 인도네시아는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에서 WTO 통신부속서 및 참조문서 내용과 일부 WTO 플러스 조항 및 내용을 담은 서비스 챕터의 부속서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독립된 챕터를 도입하여 포괄적인 국내 규제내용을 담은 전례는 없다. 시장개방 협상을 통해 우리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보장받는 것도 중요하나, 시장 진출 이후 기존의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통신협정문은 협정당사국의 상대국 시장진출에 있어 공정경쟁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재판매, 망요소 세분화, 전용회선, 설비병설, 전기통신설비의 접근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협정문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통신시장의 비관세장벽 및 실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통신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통신 챕터 템플릿을 마련하여 한-인도네시아 FTA 통신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하연 외 (2011), 『2011 FTA 협상대상국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개방 및 규제제도 현황』, 정책자료 11-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7. 5. 31), “인도네시아 이동 통신산업 현황과 이슈,” 해외시장정보.
- \_\_\_\_\_ (2008. 2. 6), “인도네시아, 2008년 통신시장 전망 및 진출방안,” 해외시장정보.
- \_\_\_\_\_ (2010. 8. 21), “인도네시아, 출자한도 등 투자제한 규정 (Negative List) 변경 추진,” 해외투자정보.
- \_\_\_\_\_ (2011. 9. 27), “인도네시아, 이동통신시장 급성장,” 해외시장정보.

- 박영덕 (2010), “한-EU FTA 통신서비스협상의 결과와 시사점,” 《KISDI 이슈리포트》, 10-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데일리》 (2010. 6. 30), “SKT, 인도네시아 음원시장 진출..‘점유율 40% 목표’”.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12. 10), “인도네시아 통신정보기술부, 통신사업자의 국산장비사용비중 35% 의무화”, 동향정보.
- \_\_\_\_\_ (2012), “국가별 방송통신 현황 2011”.
- BKPM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2007). “Presidential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77 of 2007 on List of Business Fields Closed to Investment and Business Fields Open, with Conditions, to Investment.”
- \_\_\_\_\_ (2010). “Presidential Regula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6 of 2010 on List of Business Fields Closed to Investment and Business Fields Open, with Conditions, to Investment.”
- BMI (2012. 3. 1). “Indonesia Telecommunications Report Q2 2012.”
- Channel NewsAsia (2008. 5. 9). “Temasek, ST Telemedia, SingTel to challenge Jakarta court ruling.”
- DGTP (우편통신부, 1999). “Law of the Republic Indonesia No.36 of 1999 Regarding Telecommunication Operation.”
- \_\_\_\_\_ (2000). “Government Regulation No.52 of 2000 Regarding Telecommunication Operation.”
- Financial times* (2011. 6. 8). “AT&T wins licence race in Indonesia.”
- ITU (2011). “World Telecommunication/ICT Indicators 2011.”
- Jakarta Globe* (2011. 3. 14). “Saudi Firm Eyes Bigger Axis Stake.”
- \_\_\_\_\_ (2012. 3. 1). “Bakrie Telecom Eyes Stake Sale to Partner-Sources.”
- Jakarta Post* (2007. 6. 7). “The newly-unveiled negative list of investment has turned out to be far from negative.”
- OECD (2010). “OECD Investment Policy Reviews-Indonesia 2010.”

- USTR (2011).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s-Indonesia.”
- \_\_\_\_\_ (2010. 12. 22). “USTR Section 1377 Request for Comments Concerning Compliance with Telecommunications Trade Agreements.”
- WTO (1991. 7. 10). “The Services Sectoral Classification List.” MTN.GNS/w/120.
- \_\_\_\_\_ (1994. 4. 15). “Trade in Services-Indonesia-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GATS/SC/43.
- \_\_\_\_\_ (1997. 4. 11.). “Trade in Services-Indonesia-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Supplement 2.” GATS/SC/43/Suppl.2.
- \_\_\_\_\_ (2005. 4. 22). “INDONESIA-CONDITIONAL INITIAL OFFER.” TN/S/O/IDN.
- \_\_\_\_\_ (2007. 6. 11). “Trade Policy review-Indonesia.” WT/TPR/S/184/Rev.1.

인도네시아-일본 FTA 협정문

아세안-한국 FTA 협정문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협정문

<첨부 1> 인도네시아 WTO GATS 통신서비스 양허표

구분	시장진입제한	내국민대우제한
시내서비스 - 공중교환전화 서비스 (CPC 7521) - 회선교환공중 데이터네트워크 서비스 (CPC 7523**) - 텔레컨퍼런스 서비스 (CPC 75292)	M1: 제한 없음 M2: 제한 없음 M3: 시내 서비스는 PT Telkom 과 5개의 지역합작운영체계사업자에 한해 독점적으로 공급 가능(2011년 까지) 요구되는 법적 단위 유형은 다음과 같음 - 합자투자 - 합작운영 또는 계약 매니지먼트 외국인지분제한은 35% M4: 합자 회사의 경영 및 기술 전문가는 20명으로 제한	M1: 미양허 M2: 미양허 M3: 제한 없음 M4: 수평적 양허사항 참조
장거리서비스 - 공중교환전화 서비스 (CPC 7521) - 회선교환공중 데이터네트워크 서비스 (CPC 7523**) - 텔레컨퍼런스 서비스 (CPC 75292)	M1: 제한 없음 M2: 제한 없음 M3: 장거리 서비스는 PT Telkom에 한해 독점적으로 공급 가능(2006년까지) 요구되는 법적 단위 유형은 다음과 같음 - 합자투자 - 합작운영 또는 계약 매니지먼트 외국인지분제한은 35% M4: 합자 회사의 경영 및 기술 전문가는 20명으로 제한	M1: 미양허 M2: 미양허 M3: 제한 없음 M4: 수평적 양허사항 참조
국제서비스 - 공중교환전화 서비스 (CPC 7521) - 회선교환공중 데이터네트워크 서비스 (CPC 7523**) - 텔레컨퍼런스 서비스 (CPC 75292)	M1: PT Indosat과 PT Satelindo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가능(2005년까지) 콜백 서비스 불가 M2: 콜백 서비스 불가 M3: 국제 서비스는 PT Indosat과 PT Satelindo에 한해 독점적으로 공급 가능(복점) 요구되는 법적 단위 유형은 다음과 같음 - 합자투자 - 합작운영 또는 계약 매니지먼트 외국인지분제한은 35% M4: 합자 회사의 경영 및 기술 전문가는 20명으로 제한	M1: 미양허 M2: 미양허 M3: 제한 없음 M4: 수평적 양허사항 참조

구분	시장진입제한	내국민대우제한
패킷교환공중데이터 네트워크 서비스 (CPC 75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X. 25</li> <li>- 프레임중계 서비스</li> <li>- 시내 서비스</li> <li>- 장거리 서비스</li> <li>- 국제 서비스</li> </ul>	M1: PT Indosat과 PT Satelindo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가능 M2: 제한 없음 M3: 비독점적 기준으로 세 명의 사업자가 서비스 공급 중 요구되는 법적 단위 유형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자투자 또는</li> <li>- 합작운영</li> </ul> 외국인지분제한은 35% M4: 합자 회사의 경영 및 기술 전문가는 20 명으로 제한	M1: 미양허 M2: 미양허 M3: 제한 없음 M4: 수평적 양허사항 참조
텔레텍서비스	M1: PT Indosat과 PT Satelindo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가능 M2: 제한 없음 M3: 요구되는 법적 단위 유형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자투자 또는</li> <li>- 합작운영</li> </ul> 외국인지분제한은 35% M4: 합자 회사의 경영 및 기술 전문가는 20 명으로 제한	M1: 미양허 M2: 미양허 M3: 외국인 서비스 사업자는 세계적 수준의 사업자이어야 함 M4: 수평적 양허사항 참조
전신서비스	M1: 제한 없음 M2: 제한 없음 M3: 7명의 사업자가 서비스 공급 중 요구되는 법적 단위 유형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자투자</li> </ul> 외국인지분제한은 35% M4: 합자 회사의 경영 및 기술 전문가는 20 명으로 제한	M1: 미양허 M2: 미양허 M3: 제한 없음 M4: 수평적 양허사항 참조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전화 서비스 (CPC 75213)</li> </ul>	M1: 제한 없음 M2: 제한 없음 M3: 7명의 사업자가 서비스 공급 중 요구되는 법적 단위 유형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자투자</li> </ul> 외국인지분제한은 35% M4: 합자 회사의 경영 및 기술 전문가는 20 명으로 제한	M1: 미양허 M2: 미양허 M3: 제한 없음 M4: 수평적 양허사항 참조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S</li> </ul>	M1: 제한 없음 M2: 제한 없음 M3: 국영기업과의 합자투자를 통해서만 진입 가능 외국인지분제한은 35% M4: 합자 회사의 경영 및 기술 전문가는 20 명으로 제한	M1: 미양허 M2: 미양허 M3: 제한 없음 M4: 수평적 양허사항 참조

구분	시장진입제한	내국민대우제한
- 인터넷접근 서비스	M1: 2005년까지 PT Indosat과 PT Sate-lindo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국제 서비스 가능 M2: 제한 없음 M3: 30개 이상의 허가(license) 발급됨 요구되는 법적 단위 유형은 다음과 같음 - 합자투자 또는 - 합작운영 외국인지분제한은 35% M4: 경영 및 기술 전문가는 20명으로 제한	M1: 미양허 M2: 미양허 M3: 제한 없음 M4: 수평적 양허사항 참조
국내: - 지역 및 전국호출 서비스 (CPC 75291)	M1: 제한 없음 M2: 제한 없음 M3: 현재 10개의 전국 사업자와 70개 이상의 지역 사업자 존재 요구되는 법적 단위 유형은 다음과 같음 - 합자투자 또는 - 합작운영 외국인지분제한은 35% M4: 경영 및 기술 전문가는 20명으로 제한	M1: 미양허 M2: 미양허 M3: 제한 없음 M4: 수평적 양허사항 참조
국내: - 공중전화 서비스	M1: 제한 없음 M2: 제한 없음 M3: 공중전화 서비스 공급을 위한 터미널 장비의 공급 및 관리는 몇몇 지역 사업자에 의해 공급됨 요구되는 법적 단위 유형은 다음과 같음 - 합자투자 - 합작운영 또는 - 계약 매니지먼트 외국인지분제한은 35% M4: 경영 및 기술 전문가는 20명으로 제한	M1: 미양허 M2: 미양허 M3: 제한 없음 M4: 수평적 양허사항 참조
음성메일 서비스 (CPC 7523)	M1: 제한 없음 M2: 제한 없음 M3: 기존에 존재하는 회사 외 추가적으로 5개의 외국인 서비스 사업자의 진입 허용	M1: 제한 없음 M2: 제한 없음 M3: 2020년까지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국내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높은 납입자본금을 요구
이메일 서비스 (CPC 75232)	M4: 이사(director) 및 기술 전문가 외 미양허	M4: 수평적 양허사항 참조

구분	시장진입제한	내국민대우제한
컴퓨터시분할서비스 (CPC 84330) 비디오텍스 서비스 (CPC 75229) 이메일박스 서비스 (CPC 75232) 파일전송 서비스 (CPC 75299) 가정용원격검침알람 (CPC 75299)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CPC 75299) 경영정보 서비스 (CPC 75299)	M1: 제한 없음 M2: 제한 없음 M3: 기존에 존재하는 회사 외 추가적으로 5개의 외국인 서비스 사업자의 진입 허용 M4: 이사(director) 및 기술 전문가 외 미양허	M1: 제한 없음 M2: 제한 없음 M3: 2020년까지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국내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높은 납입자본금을 요구 M4: 수평적 양허사항 참조
추가 약속	참조문서	제한적 수용 - 제5조에서 규제당국과 기본통신서비스제공자의 분리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제6조에서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절차를 “비차별적”으로 운영해야 함을 명시하지 않음
	기타 규제원칙	외국계서비스제공자는 국제적 경험을 가진 세계적 사업자여야 함 유형승인체계 존재 기본통신서비스요금은 정부에 의해 결정됨 2011년 독점권 소멸 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도입 검토 예정

※ w/120 분류코드 미수용

※ M1(Mode 1: 국경 간 공급), M2(Mode 2: 해외소비), M3(Mode 3: 상업적 주재), M4(Mode 4: 자연인 이동)

<첨부 2> 수평적 양허 및 MFN 면제

구분	세부사항
수평적 양허	- 상업적 주재 관련, 개별 서비스 분야에서 달리 기재하지 않는 한, 상업적 주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합자투자의 형태 그리고/또는 대표자 사무실만 허용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Enterprise, Perseroan Terbatas/PT) 형태만 가능 • 외국인지분제한 49% 이하
MFN 면제	관련 사항 없음